

(제13-1호) <신설 2017.7.21>

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·변경

1. 구분(제정 또는 변경)	변경
2. 제정일(변경일)	2023년 4월 20일
3. 변경 시 변경 주요 내용	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승계에 관한 사항 조항 일부 문구
4. 지배구조내부규범 전문	표 아래에 첨부

<첨부> 지배구조내부규범 전문

기재상의 주의

* 참고 조문: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,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5조제3항

주1) 공시 대상 :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

주2) 지배구조내부규범 전문을 첨부

주3) 개별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공시 사항

수시공시 일정

※ 2023년 4월 21일

지배구조내부규범

2017. 3. 1 제정 2023. 4. 20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범은 금융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"지배구조법"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(이하 "저축은행"이라 한다)이 주주와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시) ①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·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(이하 "지배구조 연차보고서"라 한다)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저축은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제정 등)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·변경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(상호저축은행법, 지배구조법, 상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고, 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포함한다. 이하 "관련 법률"이라 한다), 정관,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절 이사회 구성 현황

제5조(이사회 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,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
- ③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사회 의장)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을 선임한다.

-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,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(이하 "선임사외이사"라 한다)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
 - 2.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
 - 3.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

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

제7조(이사 자격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.

- 1.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이사는 금융, 경제,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제8조(사외이사 자격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.

- 1.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사외이사는 금융, 경영, 경제, 법률, 회계, 소비자보호,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

관련된 분야에서 연구·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1. 전문경영인(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)
2.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
3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
4.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
5.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

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·책임

제9조(이사회 권한) 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, 경영에 관한 사항, 재무에 관한 사항,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5.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7.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·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이사회는 심의·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④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종합경영분석
2.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
3. 그 밖에 이사회 및 의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(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)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- 3.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제10조(이사의 권한과 책임)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, 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
제11조(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) ①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절 이사의 선임·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
제12조(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)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사외이사, 대표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.

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,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이사 퇴임사유 및 절차)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임기가 만료된 경우
- 2.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
- 3. 관련 법률, 정관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4.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

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절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

제14조(이사회 소집)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회일 1주간 전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5조(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)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, 그 소집 회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.

제16조(의결권 행사 방법) ① 이사회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17조(운영실적 등의 평가) ①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 이 경우 평가는 자기평가, 저축은행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·구성·기능

제18조(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)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감사위원회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임원후보추천위원회
 2. 감사위원회
 3. 위험관리위원회
 4. 보수위원회
-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 의결은 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이 규범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위원회의 대표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로서,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 - ⑤ 이 규범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,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19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)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-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,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.
-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20조(감사위원회)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(이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.

- ② 감사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.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
-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.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·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·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. 이 경우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
-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-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21조(위험관리위원회)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-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
 2.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
 3.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
 4.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
 5.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
 6.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
 7.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
 8.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이 경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④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.

제22조(보수위원회) ① 보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- ②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
 2.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
 3. 보수체계의 설계·운영 및 그 설계·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
 4.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
 5.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
- ③ 보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.

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23조(운영실적 등의 평가)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.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재선임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
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

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

- 제24조(임원별 자격요건)**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를,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.
-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.
-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.
-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.
- ⑤ 저축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2절 임원의 권한·책임

- 제25조(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)** ① 저축은행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.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.

- 제26조(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)**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.

- 제27조(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)** ① 준법감시인은 저축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,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,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(이하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한다)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- 제28조(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)**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,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.
-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절 임원의 선임·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
제29조(임원의 선임)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.

-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.
-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.
-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.
-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.

제30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적용한다.

-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,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-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다.

제31조(임원의 퇴임) ①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한다.
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,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되,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자(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)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퇴임한다.
-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퇴임한다.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임한다.

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

제32조(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) ① 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저축은행은 임원의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33조(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) ① 저축은행은 사내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게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

제34조(임원 성과평가 등) ①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, 임원의 담당업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③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,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.

제35조(보수의 지급) ① 임원(사외이사, 비상임이사, 감사위원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,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(또는 위임)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

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

제36조(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)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매년(또는 매 사업연도)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

제37조(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) ① 최고경영자(대표이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경영승계 절차(이하 "경영승계 절차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개시된다.

1.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
2. 최고경영자의 사임,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임원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3.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②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전
2.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후
3.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

제38조(경영승계 절차)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

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, 저축은행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, 저축은행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.

제39조(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)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최고경영자가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,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.

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

제40조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)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,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인사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인사담당 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

제41조(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)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,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,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,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. 다만,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

제42조(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)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저축은행,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

제43조(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)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.

1.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
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
3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
4.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
5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
6.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

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

제44조(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등)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주주총회 의결로 정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최고경영자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45조(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퇴임) ①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- ② 주주총회는 최고경영자가 최고경영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임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는 사임·임기만료·관련법률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범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 제2조 내지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범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- 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의결기관 : 이사회 → 주주총회